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한의학 진료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요건

중요한 변동사항을 확인하세요.

호주 전역의 한의학 진료원들은 호주 한의학위원회(Chinese Medicine Board of Australia)의 웹사이트에 **지금** 방문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법적 의무를 읽고 이를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또한 빅토리아 주를 제외한 한의학 진료원들에게 7월 1일 이전에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직종에는 한의사, 침술사, 한의약사, 동양의학 시술자 및 한약 조제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자격을 가지려면 반드시 각 주와 특별구에서 효력이 적용되는 전국 보건 진료원 규제법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National Law)에 의거하여 호주 한의학위원회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11년 광범위한 대중적인 자문을 거친 후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호주 주와 특별구 보건 장관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등록 기준 중 하나인 **조상법 및 일반 등록 자격 요건 등록 기준 (Grandparenting and General Registration Eligibility Registration Standard)**은 위원회에서 만든 조항이, (유일하게 규제 받고 있는) 빅토리아 주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학 진료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적인 정책의 일환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만든 또 하나의 기준으로 **영어 능력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진료원들은 일반 등록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따릅니다. 이 조건의 예를 들자면, 진료원과 환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적합한 통역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처벌적인 성격은 아니나 진료원이 계속 자기 일을 하며 일반 대중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강요됩니다. 진료원들은 실질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자신의 등록상 조건을 삭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공적으로 영어 시험을 쳐서 영어 기준 점수를 충족한 이후와 같은 경우입니다.

조상법(자격 규제 이전에 활동하던 한의사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마련 규정) 조항은 2015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종료되지만 조건부로 일반 등록을 한 진료원들은 계속 관련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날짜 이후에도 영어 시험을 계속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 진료원들은 **지금** www.chinesemedicineboard.gov.au에 방문하여 국가 등록에 대한 정보를 얻고 등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